

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9. 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8월 31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5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9. 8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 편의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장사시설의 위치를 규정 (안 별표1)
 -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-26
-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, 연장 신청 시 3회에 한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 가능함 (안 제6조)
-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(안 제7조)
 - 사망당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유골을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
 -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 - 기 납골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 사망 시 가족이 합골을 원하는 경우의 화장한 유골

-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 (안 제13조 별표2)
 - 사용료 : 1기당 200,000원
 - 관리비 : 위탁자와 개별계약
-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(안 제14조)
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
- 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·감독 (안 제16조 내지 제20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